D - 44 - 2016

#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2016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이창규

ㅇ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찬석

o 제·개정 경과

- 2003년 6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03년 9월 총괄기준제정회의 심의

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법규 개정조항 반영)

- 2016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 - 미국 ANSI Standard Z358.1, 1998;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emergency eye wash and shower equipment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(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)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(보호복 등의 비치 등), 제570조(세 척시설 등), 제465조(긴급세척시설 등) 및 제508조(세안설비 등)
  - 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·심사·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(고시 제2016-40호) 제23조 및 제41조
- 0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 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6년 11월 3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D - 44 - 2016

#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화학물질로부터 신체 접촉 시 신속히 씻어내기 위한 긴급샤워기, 세안 및 세면설비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.

# 2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세안설비 등"이라 함은 긴급샤워기 및 세안설비 등을 말한다.
- (나) "긴급샤워기(Emergency shower)"라 함은 긴급시 몸전체를 세척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·설치된 샤워꼭지와 샤워꼭지에 세척용수를 공급하는 조작밸브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.
- (다) "세안설비(Eye shower)"라 함은 눈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시행규칙, 안전규칙, 보건규칙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 3. 설치장소

이 지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액체·증기 또는 가스 및 분 말 상태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긴급샤워기 및 세안설비에 적 용한다.

(1)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·사용하는 작업장소

D - 44 - 2016

- (2) 화학실험실
- (3)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중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,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, 피부 과민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

# 4. 긴급샤워기(<그림 1> 참조)

# 4.1 샤워꼭지의 성능 등

- (1) 샤워꼭지는 긴급샤워기가 설치되는 바닥에서 210 cm(82in) 이상 240 cm (96 in)이하의 높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척용수 공급관을 겸한 기둥을 설치한다.
- (2) 세척용수의 분사 범위는 바닥으로부터 150 cm(60 in)의 높이에서 지름이 50 cm(20 in) 이상이어야 한다.
- (3) 샤워기의 중심에서 반지름 40 cm(16 in) 이내에는 어떠한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세안설비나 세면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 세안설비나 세면설비는 방해물로 보지 아니한다.
- (4) 샤워꼭지의 분사량은 최소 분당 80 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분사압력은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.
- (5) 샤워꼭지는 세척용수를 전면에 골고루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.

#### 4.2 조작밸브 등

- (1)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않는 한 계속하여 열려있는 형태이어야 한다.
- (2) 조작밸브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.

D - 44 - 2016

(3) 바닥으로부터 170 cm(69 in) 이하의 높이에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작동 시킬 수 있도록 수동 또는 자동 밸브 작동기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4.3 칸막이

칸막이를 하는 경우에는 칸막이의 지름은 90cm(34 in) 이상이어야 한다.

#### 4.4 제작자의 성능시험절차

- (1) 샤워기에 유량계를 연결한다.
- (2) 25 mm 이상의 세척용수 배관에 샤워기를 연결한다. 샤워꼭지의 높이가 바닥에서 210 cm(82in)가 되도록 하고 세척용수의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량조작밸브나 펌프를 준비한다.
- (3) 긴급샤워기의 조작밸브를 여는 경우 조작밸브가 1초 이내에 열리고 열린 상태로 있는 지를 확인한다.
- (4) 분당 80 리터의 세척용수가 공급되도록 유량조작밸브를 조절하고 세척용수가 전면에 골고루 분사되는지를 확인한다. 바닥으로부터 150 cm(60in)의 높이에서 직경 50 cm(20in) 이상으로 분사되는 지를 확인한다.

#### 4.5 설치

- (1) 위험물질 취급지역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.
- (2)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접근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.
- (3)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 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4) 제작자의 안내에 따라 샤워기를 조립한다.
- (5) 잘 보이는 곳에 긴급샤워기의 설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D - 44 - 2016

- (6)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긴급샤워기를 연결한다. 유지보수를 위하여 긴급샤워기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 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장치를 설치한다.
- (7)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험한다.
  - (가) 긴급샤워기가 세척용수 수원과 잘 연결되어 있는 지와 조작밸브가 잠겨 있는지 및 배관의 연결부에 누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.
  - (나)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아니하는 한 조작밸브가 열린 상태로 있는 지를 확인하다.
  - (다) 샤워꼭지의 설치 높이가 적절한 지와 사워꼭지의 분사각도 등을 확인한다.
  - (라) 세척용수의 온도를 확인한다.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 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.

# 5. 세안설비 (<그림-2> 참조)

#### 5.1 세안설비의 성능 등

- (1) 세안설비는 일시에 세척용수를 양 눈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.
- (2) 세안설비는 사용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설계 및 배치한다.
- (3) 세안설비는 스테인리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.
- (4) 세안설비의 세척용수 량은 최소 분당 1.5 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분사압력을 낮게 한다.
- (5) 세안설비의 주위에는 사용자가 눈을 세척하면서 양손으로 눈꺼풀을 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.

D - 44 - 2016

(6) 적절한 세안형태는 <그림 3>과 같이 세척용수 물줄기의 최정점에서 4.0 cm (1.5in)아래의 높이 사이에 길이가 10 cm 이상의 시험게이지를 위치시킬 경우 물줄기의 중심으로부터 등거리로 안쪽의 선은 3 cm(1.25in) 이하, 바깥쪽의 선은 8.5 cm(3.25in) 이상이어야 한다.

# 5.2 조작밸브 등

- (1)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열려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.
- (2) 조작밸브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.
- (3)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.

#### 5.3 제작자의 성능시험절차

- (1) 세안설비에 유량계를 연결한다.
- (2) 조작밸브를 여는 경우 조작밸브가 1초 이내에 열리고 열린 상태로 있는 지를 확인한다.
- (3) 분당 1.5 리터 이상의 세척용수가 공급되고 두 개의 물줄기가 거의 같은 높이까지 도달하며 사용자가 다치지 않는 정도의 압력인 지를 확인한다.

#### 5.4 설치

- (1)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, 그 외의 경우에는 10초 이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비상시 접근하는 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.
- (2) 노즐은 바닥으로부터 85 cm(35in)내지 115 cm(45in)사이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세안설비의 가장자리로부터 15 cm(6in) 이내에는 벽이나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.
- (3)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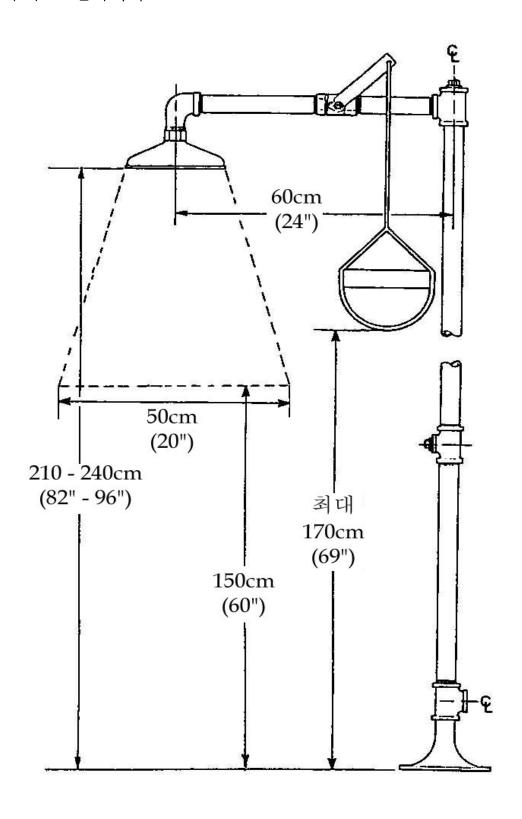
D - 44 - 2016

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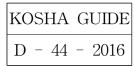
- (4) 세척용수의 수압은 게이지압력으로 0.21 MPa(30 psi) 이상으로 유지한다.
- (5)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- (6) 세안설비를 충분한 세척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배관에 연결한다. 유지보수를 위하여 세안설비와 세척용수 공급 배관사이에 차단밸브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항상 열린 상태로 시건 장치를 설치한다.
- (7) 세척용수의 온도는 따듯한 정도가 좋다. 다만, 피폭되는 화학물질이 세척용수의 온도에 따라 반응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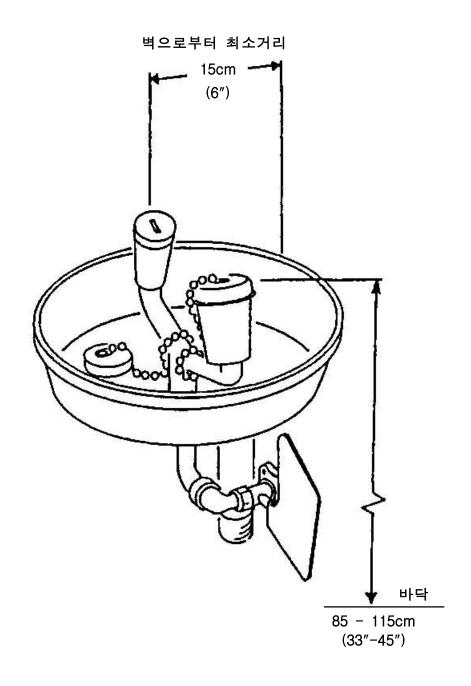
KOSHA GUIDE D - 44 - 2016

# 6. <부록> 설치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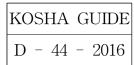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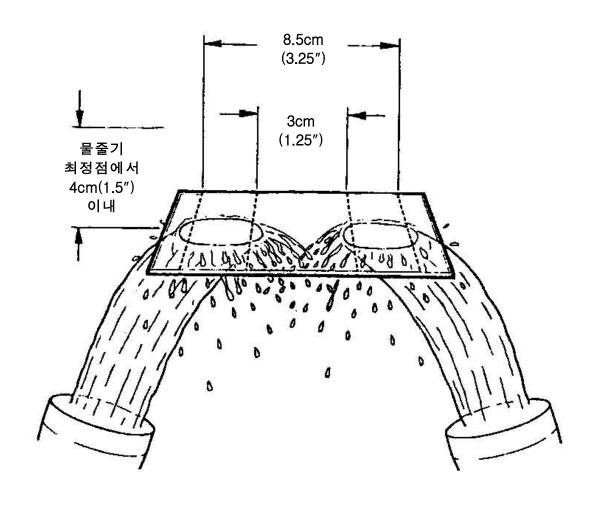
<그림 1> 긴급샤워기의 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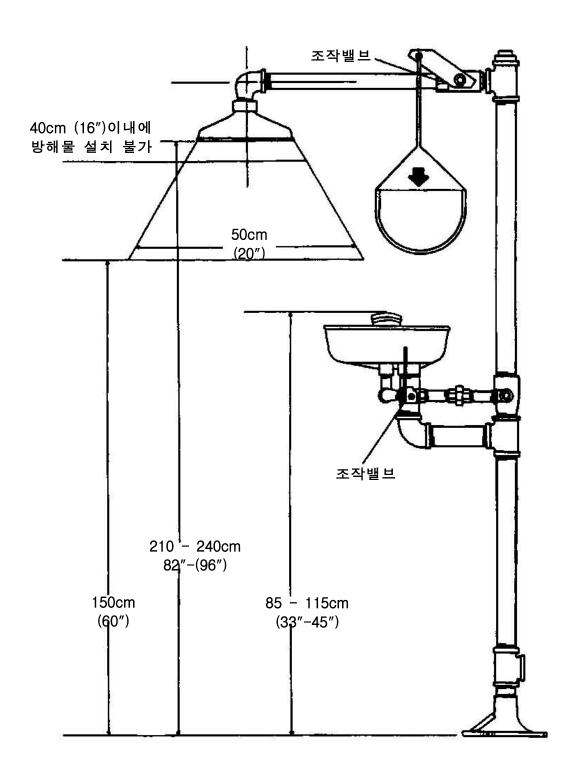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2> 세안설비의 예





<그림 3> 세안설비 시험게이지의 예



<그림 4> 긴급샤워기와 세안설비 결합 설치 예